

482-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(전화) 070-7797-2583 (문의) news.pcis@daum.net

대표 손영준

<http://cafe.daum.net/pcis>

수신	각 언론사 사회부, 정보화 담당기자
발신	정보화사회실천연합
문의	손영준 T.010-8677-9515
작성일	2014. 02. 17(월)
제목	[보도자료]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형평성 고려 안 함(총 3페이지)

금융권 방패막이 금융위원회

타법 개정하는 동안 금융위원회는 낮잠만

1. 최근 언론에 보도된 카드3사의 행정처분이 '3개월 동안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'보도를 접하고 과태료처분 근거가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의 제19조 1항을 위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[시행 2013.8.29]"의 [별표 4] <개정 2011.8.17>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이 근거라고 합니다.
2.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로서 "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"과 "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"의 과태료 규정은 <개정 2013.3.23>에 개정된 것에 비하여 금융위원회는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600만원 밖에 처분할 수 없는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.
3. 어느 분야보다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할 금융분야가 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정한 과태료 처분 규정보다 낮은 것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행정행위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-끝-

*) 관련법령 자료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8.29] [법률 제11845호, 2013.5.28, 타법개정]
금융위원회(서민금융팀) 02-2156-9477

제19조(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)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(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·훼손 및 파괴,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.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별표 4] <개정 2011.8.17>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6.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 제3항제5호	600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방송통신위원회(개인정보보호윤리과 - 개인정보보호 관련) 02-2110-1522, 1521
미래창조과학부(정보화기획과) 02-2110-2919

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 2.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·운영
 3. 접속기록의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 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 5.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·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
 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
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별표 9] <개정 2013.3.23>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4조 관련)

하. 법 제28조제1항(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3호	1,000	2,000	3,000
---	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개인정보 보호법

[시행 2013.3.23] 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, 타법개정]

안전행정부(개인정보보호과) 02-2100-2817

제29조(안전조치의무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[별표 2] <개정 2013.3.23>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 관련)

차. 법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200	2400
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-